



월간 협회소식

— 본지는 지난 한달동안 협회의 주요업무를 요약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297-7번지
 TEL:751-6601, FAX:742-7018

협회E-mail은 하루 두 번 이상 열어 보시다.

국토해양부차관 초청 조찬 간담회 참석



우리사회 이흥중회장은 지난 1. 16(금) 아침 07:30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개최된 「권도엽 국토해양부차관 초청 조찬 간담회」에 업계 대표로 참석하여 조달청의 지나친 예정가격 사정에 따른 건설업계 수익성악화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였다.

■ **국토부 참석자** : 권도엽 차관, 도대호 주택정책관, 박상우 건설정책관, 박민우 건설정책과장, 최정호 건설산업과장

■ 건의요지

- **이흥중 회장**
 - 조달청의 일방적인 예정가격 10%~20% 삭감관행 조속히 시정 요망
 - 사실상 300억이상 최저가공사의 낙찰율 72% 정도를 적용하면 실제로는 55% 정도에 업체가 수주 받는 실정임
 - 최고가치낙찰제로 조속 전환 및 그때까지라도 저가심의기준을 상향하여 실행가격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박성배 충남도회장**
 - 4대강 정비사업에 지방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배점제도 등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도입 요망
 - T.K공사가 지나치게 가격경쟁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기술비중 상향
- **서중욱 (주)대우 대표이사**
 - 주택시장 정상화 시급하므로 조속히 규제완화 및 지원대책 마련 요망
- **이중수 현대건설(주) 대표이사**
 - 민자사업 최소운영수익 보장 및 20% 최소자본 기준 인하
 - 국고채이자 → 회사채이자 인정
 - 해외사업 국내업체 과다경쟁 조정 요망

■ 답 변

-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의 가장 큰 테마가 발주자의 재량인데 발주대행기관에서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협의 시정토록 하겠음.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을 추정가격 15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09.1.15,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11)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09.1.15, 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8)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우리사회는 지역제한기준금 상향이 지난해 12.15 대통령주재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발표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현행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자 결정기준을 그대로 존치·운영할 경우 만점업체가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해당지역내 다수 업체의 실질적인 입찰참여기회 확대와 입찰의 경쟁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적격심사기준의 보완개정을 동시에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 건 의 사 항 -

■ 시공경험평가 만점기준 하향

- (현행) 각 공기업별로 최고 5배, 지자체인 경우 최고 2.1배 → (개정) 1배수준으로 대폭 하향
- ※ 대구지역의 경우 공사금액 150억원인 경우 시공경험평가 만점 업체가 1~2개사(공기업발주) 또는 4~5개사(지자체발주)이내로 경쟁성 없음

■ 지자체 발주의 지역제한 공사인 경우 해당지자체에 적격심사 만점기준 등 낙찰자 결정기준에 대한 결정권한 위임

- 지역제한공사인 경우 각 지자체가 해당지역 건설업체의 실정에 맞게 적격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개선

- (현행) 공동수급체별 각각 실적에 시공비율 곱한 금액의 합 → (개정) 대표자 지분이 50% 이상일 경우 대표자 실적 100% 인정 또는 공동수급체별 실적 단순 합산
- ※ 현행과 같이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는 공동수급체 실적평가방법에 의하면 만점이 아닌 업체간에는 아무리 공동수급체를 구성해봐도 만점 불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 활성화 유도 방안 등 도입

- 신인도 평가시 공동수급체 구성수에 따른 가점제 도입 등

한편, 각 시도회 건의에 의하여 09. 2. 4 본회 이사회시 시도회장 협의로 갑작스런 높은 상향은 지역업체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상향금액을 100억원으로 결정하여 요청기로 결의하였다.

2009년 설맞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후원

우리사회는 매년 명절을 맞아 성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를 통하여 1. 21 성금200만원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후원하였다.

전경련 주최 『대구경북지역 경제활성화 간담회』 참석 건의



전경련에서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구경북지역 간담회에 이홍중회장이 참석하여 지역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 경제단체의 지원을 건의하였다.

■ 일 시 : 2009. 1. 19(월) 12:00~14:00

■ 장 소 : 성서공단내 한국 OSG(주) 회의실

■ 참석자

- 중앙경제단체
 - 조석대 전경련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희범 한국무역협회장 등
- 대구경북지역
 - 김범일대구광역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홍중 시회장등 경제단체장 및 기업대표 30여명

■ 우리사회 건의요지

- 지역경제에서 1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회생을 위한 규제완화 및 투자 활성화

대구광역시 『지역중소기업지원 간담회』 참석 건의

우리사회 이홍중회장은 지난 1. 13(화) 대구은행 본점 비즈니스룸에서 개최된 글로벌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기관장 및 경제단체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지역건설업체에 원활한 유동성 지원을 위한 금융기관의 협조를 건의하였다.

- 건 의 사 항 -

- ▶ 차입금 만기 도래시 원활한 연장협의 및 저리의 금리 지원
- ▶ 담보대출 위주의 대출금 운용에서 신용 위주의 대출 확대
- ▶ 담보물의 지나친 보수적 평가로 인한 가치 절하 및 추가 담보요청 보류
- ▶ 일시적 유동성 악화에 따른 정책자금 등의 지원 및 기업자금의 단기적 원활한 운용을 위한 CP등의 매입
- ▶ 회사채시장에서의 수요자로서 금융기관 등의 적극적인 매수로 기업 장기자금운용 확대
- ▶ 기업의 안정적 자금운용을 위해 단기 대출보다 장기 대출 지원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근거 신설

- 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 시행 -

우리협회가 최근 건설업계의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행정안전부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근거 신설,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09.1.13부터 시행하고 있다.

■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근거규정 마련 [제73조 제7항]

- 환율변동의 영향으로 지방계약법령상의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조정 가능

■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 [부칙 제5조]

- (중전) '07.9.20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개정) '07.9.20 이전 입찰공고하고 현재까지 진행중인 공사계약도 포함

지자체 시설공사 등급별 제한경쟁입찰 운용 근거 마련

조달청의 지방자치단체 위임발주공사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위임발주 공사에 대하여는 '08.11.6부터 등급제한발주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공사를 조달청에 위임발주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조달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제한 발주할 수 있도록 우리협회가 지방계약법 시행령등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

행정안전부는 협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조달청의 등급편성과 동일한 내용으로 「시설공사 등급별 제한경쟁입찰 운용요령」을 각 시도 지사에 통보('09.1.6)하여 **지자체 공사도 등급발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2009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 제도

| 제 목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
| 건설공사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지역내 동일한 종류의 5억원 미만 공사 현장기술자 중복배치 가능 -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 - 3개의 건설공사현장 ○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해당자 배치가 능 공사금액 - 전문공사 1건 공사예정금액 1억원 | 건설법 시행령 제 35조 제3항 및 별 표5 비고6 ('09.7.1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단, 입찰에 부치지 않은 경우 최초도급계약체결 분부터 적용) |

| 제 목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공사대장 통보사항 신설 하도급건설공사 대장 및 하도급 계약통보서 서식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도급 낙찰율 기재 하도급계약에 대한 4대보험료 기재 명시 | 건설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7호, 제17호의2, 제23호 ('09.4.1시행) |
| PQ심사세부기준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 중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 ※ 2009.1.1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09.1.1) |
| 하도급 상습위반업체에 대해 신인도 평가에 있어 감점항목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에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2점 감점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09.1.1) |
| 적격심사세부기준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 중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 ※ 2009.1.1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09.1.1) |
| 의무선금 지급비율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억원 이상 공사 → 계약금액의 30% 10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공사 → 계약금액의 40% ※ 20억원미만 공사는 선금 의무 지급율이 50%인 점을 고려하여 현행유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09.1.2) |
| 공사대금채권 양도제한 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 가능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09.1.2) |
|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1km 이상 신설확장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재 소요량의 15%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2009.6.25시행 순환골재 의무사용 등에 관한 고시 -2009.7.1시행 |
| 외부감사대상법인 축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감사대상 자산규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사업년도 말 자산총액 100억 이상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시행일 : '09.1.1) |

박경로 고문변호사 법률코너



수성구 범어3동 33-10 법무빌딩 406호
 전화 : (053) 752-3100 팩스 : (053) 756-2607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대하여

1. 사례

발주자와 원도급업자 하도급업자 간에 2005. 10. 1. “하도급대금은 발주자가 직접지급하기로 한다”라는 합의가 있었는데, 2005. 10. 21.경 원도급업자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발주자에게 통보되었고, 이후인 2005. 11. 20.경에야 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과연 하도급업자는 위 채권자의 압류 추심명령에 우선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문제점

제3자간의 직불합의가 있는 때에 바로 원도급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는지, 아니면 하도급업자의 현실적인 직불청구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원도급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는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실무적으로 3자간의 직불합의가 있는 경우에 원도급업자의 채권자들이 공사대금을 압류하거나 원도급업자가 제3자에게 자신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해 버리는 경우에 하도급업자가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에서는 원사업자의 파산, 3자간의 합의, 2회 분 이상의 하도급대금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서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위 하도급법과 유사하게 일정한 경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 문언상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불이 합의된 경우라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와 달리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시행 및 발주자에 대한 시공한 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요청이 있기도 전에 3자 간 직불합의만으로 즉시 발주자의 원사업자(원도급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여 ①하도급업자가 실제 하도급공사를 시행하고 ②자신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③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청구를 한 때, 비로소 원도급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0717 판결 (공사대금) 참조]

5. 사례의 경우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보면, 제3자간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하도급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가 없는 한, 원도급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그대로 존속하므로, 원도급업자의 채권자가 한 압류, 추심명령은 그대로 유효하고, 하도급업자는 결국 이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도급업자로서는 3자간에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안심해서는 아니되고, 자신이 한 하도급 공사부분에 대하여 서둘러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9. 1월말 현재

VAT별도

| 구분 | 규격 | 전월가격 | 금월가격 | 수급동향 | 비고 | |
|---------|-----------------|------------------|-----------|-----------------------------|-----------------------------------|---|
| 철근 | 보통철근 | D10mm | 781,000 | 781,000 | 0 단위:M/T 0 현장도착도 | 국제고철가 반등 및 각 제강사가 40~50%정도 감소에 돌입하였으나 수요감소로 수급은 원활하며 가격도 보합세가 예상됨 |
| | | D13mm | 771,000 | 771,000 | | |
| | | D16mm | 765,000 | 765,000 | | |
| | 고장력 철근 | D10mm | 786,000 | 786,000 | | |
| | | D13mm | 776,000 | 776,000 | | |
| | | D16mm | 770,000 | 770,000 | | |
| 후판 | SM490B | 1,265,000 | 1,145,000 | 0 단위:개 0 현장도착도 | 세계경기침체로 인한 원자재가격 인하로 전월대비 9.5%인하됨 | |
| H형강 | 100X100X6X8mm | 890,000 | 890,000 | 0 단위:M/T 0 현장도착도 | 가격동향은 철근과 유사하며 수급사정도 양호함 | |
| | 300X300X10X15mm | 890,000 | 890,000 | | | |
| | 400X400X13X21mm | 950,000 | 950,000 | | | |
| 시멘트 | 보통시멘트 40kg | 3,300 | 3,300 | 0 단위:포 0 대리점-수 요자 직거래 | 유연탄가 인상으로 가격인상요인 있으나 수요감소로 수급 원활함 | |
| | 백색시멘트 40kg | 9,000 | 9,000 | | | |
| 레미콘 | #57(25-240-15) | 49,700 | 49,700 | 0 단위:m³ 0 현장도착도 | | |
| | #467(40-240-15) | 48,700 | 48,700 | | | |
| 벽돌 | ㉔190X90X57mm | 45 | 45 | 0 단위:개 0 현장도착도 | 수급사정 원활함 | |
| 모래 | 하천모래 | 20,000 | 20,000 | 0 단위:m³ 0 시내도착도 | 수요감소로 전체적인 수급에 현재 큰 어려움 없음 | |
| 자갈 | 자연 자갈 | #57 25mm | 13,000 | | | 13,000 |
| | | 잡석 | 12,000 | | | 12,000 |
| | 쇄석 | #467 40mm | 9,000 | | | 9,000 |
| | | #57 25mm | 13,000 | | | 13,000 |
| 목재 (라왕) | 각재 | 1.8~3.6X9~12X4.5 | 900 | 900 | 0 단위:才 0 현장도착도 | 환율 상승으로 가격인상요인 있음 |
| | 판재 | 1.8~3.6X30X3~3.6 | 1,000 | 1,000 | | |

회원 현황

회원수 : 165개사

| 구분 | 토건 | 건축 | 토목 | 조경 | 금월계 | 전월대비 |
|-----|----|----|----|----|-----|------|
| 계 | 89 | 60 | 13 | 3 | 165 | +3 |
| 중 구 | 9 | 2 | | 1 | 12 | |
| 동 구 | 13 | 8 | 1 | 1 | 23 | |
| 서 구 | 4 | 4 | | | 8 | |
| 남 구 | 10 | 5 | 1 | | 16 | |
| 북 구 | 11 | 13 | 1 | | 25 | |
| 수성구 | 21 | 18 | 2 | | 41 | |
| 달서구 | 8 | 8 | | 1 | 17 | |
| 달성군 | 13 | 2 | 8 | | 23 | |

* 신규2, 전입3, 전출1, 등록말소1

신입회원

| 상 호 | 업종 및 등번 | 대 표 자 | 입회일자 | 전화번호 |
|----------|----------|-------|------------|----------|
| (주)일원산업 | 토건030043 | 김 호 원 | 2009.01.16 | 752-4123 |
| (주)참종합건설 | 건축030289 | 이 두 섭 | 2009.01.30 | 743-9185 |

전입회원

| 상 호 | 업종 및 등번 | 대 표 자 | 전입일자 | 전화번호 |
|------------------|----------|-------|------------|--------------|
| (주)고려종합건설 (대전에서) | 토건060075 | 권 병 문 | 2009.01.07 | 753-6424 |
| (주)현암종합건설 (경북에서) | 토건160182 | 이 호 경 | 2009.01.12 | 741-9622 |
| (주)태일건설 (강원에서) | 토목110667 | 장 성 희 | 2009.01.13 | 033-765-8106 |

건교부 위탁업무 처리 현황

단위 : 건수

| 기 간 | 신규 | 주기적신고 | 기재사항변경 | 양수도(합병) | 계 |
|--------------------------------|----|-------|--------|---------|-----|
| 금 월 (2009.01.01~01.31) | 1 | 2 | 7 | 1 | 11 |
| 누 계 (2008.01.01~2009.01.31) | 33 | 61 | 106 | 4 | 204 |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 변경사항 | 회 원 사 명 | 변 경 전 | 변 경 후 | 전화번호 |
|------|-----------|-----------------|----------------------|----------|
| 대표자 | 거원종합건설(주) | 이 상 곤 | 허 미 자 | 766-3912 |
| 소재지 | (주)남부종합건설 | 대구 동구 괴전동 165-4 |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238-7 | 961-4703 |



2008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 접수 안내

- 신고기간
 - 공사실적 신고(1차실적신고) : 2009. 2. 2 ~ 2. 16
 - 재무제표 신고(2차실적신고) : 2009. 4. 1 ~ 4. 15
- 제출서류
 - 1차 실적신고서류 : 정본철, 증명서철, 부분철, 통계정철, 자기공사철, 상호협력평가철,
 - 2차 실적신고서류 : 정본철(재무제표, 기술개발비 확인서) 부분철(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 협회 소정 양식)



회장동정

건단련주최 『2009 건설인 신년인사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9. 1. 7(수) 17:00,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지역 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장 및 유관기관단체장 간담회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9. 1.13(화) 11:30, 대구은행본점 비즈니스룸
- 하신일 : 지역건설업계 금융애로 해소 건의

국토해양부 차관건설업계 대표 간담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 1. 16(금) 07:00, 서울 르네상스호텔
- 하신일 : 조달청 예가삭감 지양 및 저가심의기준 상향등 건설업계 수익성 확보방안 건의

전경련 주최 『지역경제활성화 대구경북지역 간담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 1. 19(월) 12:00, 한국 OSG(주) 호산공장
- 하신일 :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건의

대구상의 지역발전분과위원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 1. 21(수) 11:00, (주)삼보모토스 회의실

토요일에는 각종 증명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십시오